은행은 본인에게 이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대한민국정부
인지세
남대문세무서장
후납승인2002-39

본인확인자	팀원	팀장	부점장

대 출 거 래 약 정 서

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년 월 일

1. 본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이 적용(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)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2. 본인은 아래 약정내용을 확약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본 인	성 명	(서명 또는 인)
	주 소	

■ 대출금 수령계좌 지정 · 위임 표시

금 액	**금 원**	위임자(채무자)	(서명 또는 인)
대출금수령계좌	계좌번호 :	예금주 :	

제1조 거래조건

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내에 "∨"표시 합니다.)

대 출 과 목			
대 출 금 액	**금 원 (₩)**		
대 출 개 시 일	□ 20 년 월 일	□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.	
대 출 기 간	( )년 ( )개월 ※ 대출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기재	대출만료일	20 년 월 일
대출이자율	변동금리	5년단위	연 % 적용되며,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5년마다 변동됩니다.
		기타	연 % 적용되며,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변동되며, 은행은 금리 인상 시 고객님께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, SMS, 이메일 등 한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통지해드립니다.
		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	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( )%,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 ( )% 적용되며, 특례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금리는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변동되며, 은행은 금리 인상 시 고객님께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, SMS, 이메일 등 한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통지해드립니다. ※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,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 (최장 12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) ※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-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: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금리 연 ( )%에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저 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( ) % 부과 *연소득 7.5천만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는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됩니다. - 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: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. 단,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*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. 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

연소득	하한금리
1.3억원 이하	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
1.3억원 초과	대출접수일 기준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

※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로 운용계획 변경 시 [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]

<table>
<tr><td rowspan="6">대출이자율</td><td rowspan="3">고 정
금 리</td><td>수익공유형
(신혼희망타운
전용 상품 포함)</td><td>연 %</td></tr>
<tr><td>손익공유형</td><td>최초5년 연 % , 5년이후 연 %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연 %
※ 대출기간 10년 및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적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10년 고정 후 변동금리</td><td>연 %
※ 10년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※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
※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※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.
※ 고정금리 선택 시 0.3%p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.2%p,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.1%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
※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,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<table>
<tr><td>구 분</td><td>구입자금</td><td>전세자금</td></tr>
<tr><td>기준금리
적용기준</td><td>대출기간 ( ) 년 이며,
부부합산 연소득 ( ) 원 임</td><td>임차보증금 ( )원 이며,
부부합산 연소득 ( )원 임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지연배상금률</td><td colspan="3">·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4%
·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5%
·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4%
·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+ 연 5%
· 다만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개인채무자보호법”)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.(단,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.)
※ 다만, 지연배상금률이 연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%를 적용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이자 및
지연배상금
계산방법</td><td colspan="3">※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다만, 분할상환대출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이자는 월단위로 계산합니다.
※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회차별 실행금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,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행금액 중 5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이자율 변경 시
적용기준</td><td colspan="3">이자율 변경시 변경기준일로부터 변경됩니다. 다만, 분할상환대출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.</td></tr>
<tr><td>대출실행방법</td><td colspan="3">☐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
☐ 증빙서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 하되, 대출금의 일정비율은 추가담보 취득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.
☐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매 ( )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.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원리금의
상환방법</td><td>☐ 분할상환</td><td colspan="2">원금은 대출개시일로부터 (☐ ( )개월 동안, ☐ 년 월 일까지)거치하고, 이 기간 중의 이자는 매월( )일에 후지급하며, 할부금은 거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매월( )일에 [☐ 원리금균등 ☐ 원금균등]으로 분할상환 합니다.</td></tr>
<tr><td>☐ 일시상환</td><td colspan="2">원금은 위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며, 이자는 매월( )일에 후지급하되, 최종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</td></tr>
<tr><td>☐ 혼합상환</td><td colspan="2">(원리금 · 원금균등분할 + 일시상환)
금 원(대출금액의 %상당금액)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 하되 이자는 매월( )일에 후지급하고 최종 이자는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
위 금액 이외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 익월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개시일 해당일 (매월 일)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[☐ 원리금균등 ☐ 원금균등] 분할상환 합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일부 상환은 회차별 실행금액 단위별로만 가능합니다.</td></tr>
<tr><td>할부금의
상환방법</td><td colspan="3">☐ 원 단위로 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제2조 인지세의 부담

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(제4조)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제3조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의 변동 및 지연배상금

①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, 대출기간, 호당대출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릅니다.

②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제1조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에 따르기로 합니다.

③ 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기로 합니다.(단,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)

제4조 대출금의 분할실행

①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후에 확정되며, 확정방법은 대출실행내역표등의 증빙자료에 의합니다.

②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분할실행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. 이 경우 최초 분할실행일을 기준으로 거치기간, 대출기간 만료일 및 약정납입일을 정하기로 합니다.

③ 제1조의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분할실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행된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확정하기로 합니다.

④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금융사정의 변동, 채권보전상 필요 있는 때에는,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,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추가담보

① 본인이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(대출받은 토지위에 건설하는 시설물, 건물 포함)은 건설도중이나 건설 완료후에도 은행의 승인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, 저당권, 지상권, 전세권, 가등기, 임차권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,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로 하며, 동 시설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,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 설정하기로 합니다.

② 제1항의 시설물과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과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

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.

④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(후취담보 취득 시 포함)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6조(담보의 제공)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

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.

1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

2. 주택법령,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때 또는 시정조치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

3. 본인의 귀책사유로 승인 또는 허가받은 사업계획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

4. 해당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 · 별장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또는 태양열 주택인 경우 기 설치한 난방 설비를 철거한 때

5. 국민주택건설자금, 중도금대출 등을 받은 후 선순위 채권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 경우 그 초과 대출금 해당액

6. 전(월)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

가. 임차주택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퇴거한 경우

나. 임차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를 초과한 경우

다. 목적물 변경 시 법인, 조합, 문중, 교회, 사찰,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(단,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)

라.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(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)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마.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(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)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7. 입양아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해당 입양아를 파양하는 경우

8.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(이하 "세대원")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

9.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
10. 제출한 자료가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
11.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.88억원(구입자금), 3.37억원(전월세자금)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

상기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 인	(서명 또는 인)

제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

①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,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「민법」상 미성년 형제·자매(이하 "미성년 형제·자매")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 단,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② 본인 및 세대원 전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[☐ 생애최초 ☐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☐ 신청일 현재]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

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(월)세자금,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,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무주택 등 관련 특약사항을 확인 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 인	(서명 또는 인)

제8조 소유권이전·임차계약 해지시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

①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 단, 수익·손익공유형 모기지 및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채무인수는 불가하나, 차주의 사망, 이혼으로 인한 차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허용합니다.

②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

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.[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가능합니다.]

1. 구입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*4.88억원*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*1천만원 이내*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*연 0.2%p 가산*하며, *1천만원 초과*인 경우 *연 3.0%p 가산*, *5천만원 초과*인 경우 *연 5.0%p 가산*, *1억원 초과*인 경우 *연 5.0%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* 처리하기로 합니다.
2. 전(월)세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*3.37억원*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*1천만원 이내*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*연 0.1%p 가산*하며, *1천만원 초과*인 경우 *연 2.0%p 가산*, *5천만원 초과*인 경우 *연 4.0%p 가산*, *1억원 초과*인 경우 *연 4.0%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* 처리하기로 합니다.

※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(대환 포함)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합니다.

②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채무인수, 기한연장, 상환방법,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.

③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, 일반자산, 자동차,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.

④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기한이익상실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(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)부터 적용합니다.

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과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 공시, 기한이익상실, 우대금리 적용 제외 및 조건변경 제한과 최종 적격 확정시 금리 적용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 인	(서명 또는 인)

제10조 기한연장 및 목적물 변경

① 오피스텔구입자금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한 경우 0.1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② 전세자금(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(대환 포함),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한 경우 0.2%(단, 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(대출 담보 보증서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) 이하인 경우 0.1%)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③ 주거안정월세대출 기한연장시에는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하며,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금액의 일반형 25%(우대형 10%)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.1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④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계층 · 한부모가정으로 금리우대를 받은 경우 기한연장 시 마다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계층 · 한부모가정 중 1가지 사항을 확인하고,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하기로 합니다.

⑤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율의 변경시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
⑥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(월세) 대환대출 기한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환대출금의 25% 이상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 다만, 기한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환대출금의 25% 이상을 대출기간(단, 2회차 연장시부터는 직전 기한연장 기간) 중 상환한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.

⑦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(창업)청년 우대금리 요건 충족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. 단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⑧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
1. 본 대출 취급이후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(단,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)
2. 퇴거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(단,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)
3. 본 대출 취급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

⑨ 대출목적물 변경 즉시 은행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,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합니다. 또한,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

제11조 대출금 수령위임

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서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 중 위 대출금 수령계좌의 금액(부대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)의 청구 · 수령할 일체의 권한을 위와 같이 위임하며 이에 따르는 법적분쟁 등이 있을 경우, 은행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
제12조 자산기준 초과 시 대출계약의 철회

제9조에 따라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, 대출계약체결일,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 그 외 사항은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.

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

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이용 중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전세사기특별법") 제2조 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(이하 "전세사기피해주택")의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회수금액 전액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하며, 회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합니다.

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또는 본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③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본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

■ 기타 특약사항

본 인	(서명 또는 인)

- 고객 고지 사항 -

1. 제12조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합니다.

2.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, 제13조,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며,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

3.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본약관 제4조의 3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-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본 인	(인)	자필확인	